

산업안전 Q&A



이번 노동부 예규 제491호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는 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준수』라 하여 종전 법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100인 미만 사업장이 규모를 확장하여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1. 종전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491호)은 그간 노동부 예규로 운영하여 왔으나,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규칙에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예규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져 동 예규는 폐지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6의2로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3.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유해·위험업종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바코드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통제 및 각종 안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현장도 적용코자 하는데, 현장출력 인원관리는 출력일보를 별도로 제출 받기 때문에 공무 등의 업무에 바코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관리업무에만 활용하고 있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출력관리 등 노무나 공무 등에 활용하지 않고 보호구지급, 무재해, 건강관리, 안전교육, 안전수칙 위반 등 각종 안전자료만을 관리·활용하는 바코드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정신병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근거하여 병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관한 사항으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1항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법 제3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영별표1의 “대상사업”에 나열된 업종은 영별표1의 “적용규정”에 나열된 규정만 적용되고, 영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 또, 영별표1의 5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외)”의 사업은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的 조항을 적용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을 제외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병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질의한 병원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6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여 안전관련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현장 안전관련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회 개최 비용이나 근로자 가족 참여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여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대회 개최비용 및 포상금에 대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금액은 공사 규모 및 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